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	제출연월일	2026. 8. 19.
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민희

I.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II. 주요골짜

1. 세입

- 재산세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2. 세출

-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및 주요 현안사업 등

III. 예산안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1,040,750,506	1,005,076,788	35,673,718	3.55%
일반회계	1,011,651,752	975,563,542	36,088,210	3.70%
특별회계	29,098,754	29,513,246	△414,492	△1.40%
의료급여기금	514,671	390,360	124,311	31.85%
건축안전	1,037,119	1,022,181	14,938	1.46%
주차장	27,546,964	28,100,705	△553,741	△1.97%

IV. 검토사항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총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40,750,506	1,005,076,788	35,673,718	3.55%
일 반 회 계	1,011,651,752	975,563,542	36,088,210	3.70%
특 별 회 계	29,098,754	29,513,246	△414,492	△1.40%
의 료 급 여 기 금	514,671	390,360	124,311	31.85%
건 축 안 전	1,037,119	1,022,181	14,938	1.46%
주 차 장	27,546,964	28,100,705	△553,741	△1.97%

-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5%인 356억 7,371만 8천원이 증가한 1조 407억 5,050만 6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0%인 360억 8,821만원이 증가한 1조 116억 5,17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0%인 4억 1,449만 2천원이 감소한 290억 9,875만 4천원임.

2.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1,011,651,752	100%	975,563,542	100%	36,088,210	3.70%
지 방 세 수 입	387,771,481	38.33%	370,583,768	37.99%	17,187,713	4.64%
세 외 수 입	115,663,796	11.43%	113,060,117	11.59%	2,603,679	2.30%
지 방 교 부 세	18,220,000	1.80%	18,220,000	1.87%	0	0.00%
조 정 교 부 금 등	34,792,635	3.44%	34,792,635	3.57%	0	0.00%
보 조 금	370,459,056	36.62%	366,921,001	37.61%	3,538,055	0.96%
보전수입 등 내 부 거 래	84,744,784	8.38%	71,986,021	7.38%	12,758,763	17.7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사항 없으며,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의 37.99%인 3,705억 8,376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나, 171억 8,771만 3천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38.33%인 3,877억 7,148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의 11.59%인 1,130억 6,011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6억 367만 9천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11.43%인 1,156억 6,379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 보조금은 기정예산의 37.61%인 3,669억 2,100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35억 3,805만 5천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36.62%인 3,704억 5,905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의 7.38%인 719억 8,602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127억 5,876만 3천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8.38%인 847억 4,478만 4천원이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29,098,754	100%	29,513,246	100%	△414,492	△1.40%
세 외 수 입	19,146,628	65.80%	19,146,628	64.87%	0	0.00%
보 조 금	601,341	2.07%	561,341	1.90%	40,000	7.13%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9,350,785	32.13%	9,805,277	33.22%	△454,492	△4.64%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 보조금은 기정예산의 1.90%인 5억 6,134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4,0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2.07%인 6억 134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기정예산의 33.22%인 98억 527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나, △4억 5,449만 2천원이 감소하여 추경예산안의 32.13%인 93억 5,078만 5천원이 편성되었음.

3.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합 계	1,040,750,506	100%	1,005,076,788	100%	35,673,718	3.55%
일 반 회 계	1,011,651,752	100%	975,563,542	100%	36,088,210	3.70%
의 회 사 무 국	6,431,366	0.64%	6,316,708	0.65%	114,658	1.82%
감 사 담 당 관	293,649	0.03%	293,649	0.03%	0	0.00%
홍 보 담 당 관	2,252,313	0.22%	2,252,313	0.22%	0	0.00%
문 화 행 정 국	205,214,893	20.29%	198,019,986	20.30%	7,194,907	3.63%
밝 은 미 래 국	77,133,183	7.62%	75,357,855	7.72%	1,775,328	2.36%
주 민 생 활 국	549,535,541	54.32%	531,978,281	54.53%	17,557,260	3.30%
기 획 재 정 국	23,932,702	2.37%	24,285,323	2.49%	△352,621	△1.45%
공 간 혁 신 국	35,286,642	3.49%	33,909,573	3.48%	1,377,069	4.06%
도 시 관 리 국	4,254,492	0.42%	3,854,277	0.40%	400,215	10.38%
안 전 건 설 국	51,784,211	5.12%	47,497,563	4.87%	4,286,648	9.02%
보 건 소	55,532,760	5.49%	51,798,014	5.31%	3,734,746	7.21%
특 별 회 계	29,098,754	100%	29,513,246	100%	△414,492	△1.40%
의 료 급 여	514,671	1.77%	390,360	1.32%	124,311	31.85%
건 축 안 전	1,037,119	3.56%	1,022,181	3.46%	14,938	1.46%
주 차 장	27,546,964	94.67%	28,100,705	95.21%	△553,741	△1.97%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360억 8,821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운영위원회 소관은 1개 부서에 1억 1,465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14개 부서에 271억 8,827만 2천원이 증가, 1개 부서에 △6억 6,077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20개 부서에서 98억 477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1개 부서에 △3억 5,871만 6천원이 감소됨.
- 특별회계는 총 △4억 1,449만 2천원이 감소했는데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1개 부서에 1억 2,431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1개 부서에 1,493만 8천원이 증가, 1개 부서에 △5억 5,374만 1천원이 감소됨.

재 정 건 설 위 원 회 소 관

1. 총 규모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9%인 89억 725만 4천원이 증가한 721억 4,243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69%인 94억 4,605만 7천원이 증가한 435억 5,835만 2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인 5억 3,880만 3천원이 감소한 285억 8,408만 3천원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2,142,435	63,235,181	8,907,254	14.09%
일 반 회 계	43,558,352	34,112,295	9,446,057	27.69%
특 별 회 계	28,584,083	29,122,886	△538,803	△1.85%
건축안전	1,037,119	1,022,181	14,938	1.46%
주 차 장	27,546,964	28,100,705	△553,741	△1.97%

2. 세입예산안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는 7개 부서 57건에서 322억 1,213만 7천원이 증가하고, 3개 부서 4건에서 △40억 8,751만 2천원이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는 2개 부서에 3건 △5억 3,880만 3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총감액
재무과 (3건)	순세계잉여금	64,746,433	68,744,961	△3,998,528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8,520,500	0	8,520,50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698,642	0	4,698,642
재산세과 (1건)	재산세(부과조정*징수율*50%)[지방세수입]	259,369,266	242,181,553	17,187,713
재건축사업과 (1건)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사업(50%)[시·도비보조금등]	182,720	100,000	82,720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 총감액
건강정책과 (2건)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인력운영비[시·도비보조금등]	0	1,174	△1,174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고보조금등반환금]	976	0	976
건강관리과 (44건)	농식품바우처사업 이자 반납금[세외수입-이자수입]	54	0	54
	농식품바우처사업 사용잔액[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20,033	0	20,033
	농식품바우처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7,457	0	17,457
	농식품바우처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033	0	20,033
	치매예방관리사업(구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세외수입-이자수입]	33	0	33
	치매예방관리사업(보건복지부) 이자 반납금 [세외수입-이자수입]	1,555	0	1,555
	치매예방관리사업(시비매칭보조금) 이자 반납금 [세외수입-이자수입]	3	0	3
	치매예방관리사업(시비매칭보조금)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3	0	3
	치매예방관리사업(보건복지부) 사용잔액 [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5,278	0	5,278
	치매예방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3,670	0	13,670
	치매예방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6,835	0	6,83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이자 반납금[세외수입-이자수입]	95	0	9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용잔액 [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7,941	0	7,94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4,926	0	14,926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자 반납금 [세외수입-이자수입]	20	0	2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자 반납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40	0	4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	0	20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이자 반납금 [세외수입-이자수입]	2	0	2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	0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구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세외수입-이자수입]	1,943	0	1,94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용잔액 [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8,936	0	8,936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1,759	0	21,759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0,879	0	10,87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이자 반납금 [세외수입-이자수입]	1,341	0	1,34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75%) [시·도비보조금등]	2,325,312	1,718,217	607,095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 총감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4,023	0	4,02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자 반납금 [세외수입-이자수입]	3	0	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자 반납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6	0	6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3	0	3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50%)[기금]	2,000	800	1,2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25%) [시·도비보조금등]	1,000	400	600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자 반납금 [세외수입-이자수입]	914	0	914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용잔액 [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14,043	0	14,043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2,821	0	12,821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4,958	0	14,958
	치매예방관리사업(고도장비기반 치매조기검진, 방배 센터 이전설치비) 이자 반납금[세외수입-이자수입]	34	0	34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사용잔액 [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402	0	402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사용잔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804	0	804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402	0	402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50%)[세외수입-국고보조금]	219,160	277,700	△58,540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25%)[시·도비보조금등]	109,580	138,850	△29,27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30%)[기금]	107,202	87,702	19,500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사업(35%)[시·도비보조금등]	125,069	102,319	22,750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65%)[시·도비보조금등]	2,423,116	1,561,482	861,634
위생과 (4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자 반납금 [세외수입-이자수입]	1,006	0	1,00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용잔액 [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35	0	3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고보조금등반환금]	892	0	89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용잔액 및 이 자 반납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041	0	1,041
의료지원과 (6건)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인력운영비 [시·도비보조금등]	1,174	0	1,174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이자 반납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05	0	105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05	0	105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건강면접) 이자 반납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93	0	293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건강면접)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46	0	146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739	0	2,739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건 축 과 [건축안전특별회계] (1건)	순세계잉여금	369,562	354,624	14,938
주 차 관 리 과 [주차장특별회계] (2건)	순세계잉여금	8,862,557	9,450,653	△588,096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4,355	0	34,355

3. 세출예산안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4억 4,605만 7천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억 3,880만 3천원 감소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기획예산과 (p22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4,671	0	4,671
	부정수급 모니터링 자치단체 분담금	4,671	0	4,671
	예비비	10,081,797	10,445,184	△363,387
	일반예비비	9,281,797	9,645,184	△363,387
세무관리과 (p224)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34	0	34
	전기자동차 보급 이자 반납금 [국]	31	0	31
	전기자동차 보급 이자 반납금 [시]	3	0	3
재산세과 (p225)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6,061	0	6,061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6,061	0	6,061
교통행정과 (p229)	교통소통대책	491,380	466,380	25,000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모범운전자)	451,650	426,650	25,000
	대중교통 환경개선	827,880	647,584	180,296
	쿨링온돌의자 설치 및 유지관리	97,000	70,500	26,500
	한파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	103,796	0	103,796
	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50,000	0	50,000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677,560	504,052	173,508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6,531	0	6,531
	어린이 하갯길 교통안전지도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6,525	0	6,525
	승용차 마일리지제 운영 이자 반납금	6	0	6
도시계획과 (p23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57,114	0	57,114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이자 반납금	191	0	191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8,940	0	28,940
	서촌음향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7,983	0	27,983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공공인프라과 (p231)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	154,600	54,600	100,000
	도시계획시설 변경도서 작성 용역	150,000	50,000	100,000
푸른도시과 (p232~234)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860,996	2,560,996	300,000
	서리풀공원(동광로 인접) 보행로 조성사업	300,000	0	300,000
	근린공원 유지관리	3,566,882	3,086,882	480,000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726,000	486,000	240,000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330,000	150,000	180,000
	생활권 공원 보수정비사업 설계	60,000	0	60,00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38,244	0	38,244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국]	504	0	504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시]	353	0	353
	유아숲교육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국]	1,082	0	1,082
	유아숲교육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시]	758	0	758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국]	525	0	525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시]	248	0	248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97	0	97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44	0	44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299	0	299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35	0	135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35	0	135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61	0	61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202	0	202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91	0	91
	산림재해방지 조림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297	0	297
	산림재해방지 조림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90	0	90
	산림병해충방제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7,154	0	7,154
	산림병해충방제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671	0	671
	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초소)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50	0	50
	산림병해충방제(자본) 이자 반납금 [국]	92	0	92
	산림병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305	0	305
	산림병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48	0	48
	산림병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28	0	128
	산림병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34	0	34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2,264	0	22,264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578	0	1,57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이자 반납금	36	0	36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이자 반납금	54	0	54
	야생생물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용잔액	725	0	725
	2024 야생생물보호구역 이자 반납금	184	0	184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정원여과과 (p235)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16,376	0	16,376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200	0	200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86	0	86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4	0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	0	1
	공익직불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3,971	0	3,971
	2021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이자 반납금 [국]	107	0	107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01	0	101
	반려식물 보급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493	0	1,493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594	0	1,594
	친환경 농장 조성 및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615	0	615
	2024 친환경 농장 조성 및 운영 이자 반납금 [시]	94	0	94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8,110	0	8,110
재건축사업과 (p239~240)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422,937	249,997	172,940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	7,500	0	7,500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365,440	200,000	165,440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307,888	119,789	188,099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21,914	15,200	6,714
	e-그린 등기우편 비용	59,402	28,017	31,385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70,000	40,000	30,000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120,000	0	120,000
	주택재건축 전략적 정비사업 추진	13,840	9,240	4,600
	설문조사 e-그린 등기우편 발송 수수료	13,090	8,490	4,60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4,347	0	4,347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4,347	0	4,347
건축과 (p241)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8,712	0	8,712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8,712	0	8,712
공동주택관리과 (p242)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6,544	0	6,544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316	0	1,316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수도요금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5,205	0	5,20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8	0	18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5	0	5
부동산정보과 (p243)	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운영 등	85,514	71,234	14,280
	지가조사 검증수수료 등	68,050	53,770	14,28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693	0	693
	지적(임야)도면 고도화 사업 이자 반납금 [국]	54	0	54
	지적(임야)도면 고도화 사업 이자 반납금 [시]	27	0	27
	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운영 등 이자 반납 [국]	73	0	73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자 [시]	95	0	95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등 사용잔액 및 이자 [시]	405	0	405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이자 반납금 [시]	39	0	39
안전도시과 (p247)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20,818	0	20,818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0,201	0	10,201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재난대응 및 훈련강화 이자 반납금 [국]	7	0	7
	재난대응 및 훈련강화 이자 반납금 [시]	7	0	7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이자 반납금 [국]	79	0	79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이자 반납금 [시]	54	0	54
	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7,541	0	7,541
	폭염대책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205	0	1,205
	무더위쉼터 운영비 이자 반납금 [시]	49	0	49
	한파대책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455	0	455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408	0	408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이자 반납금 [시]	812	0	812
가로행정과 (p248)	서초대로42길(서초3동북합주민센터)지중화사업	890,487	577,900	312,587
	동광로(서리풀공원) 지중화사업	1,142,012	570,000	572,012
	바우미로(양재초교) 지중화사업	340,306	0	340,306
	가로정비 순찰차량 및 창고 유지관리	62,672	58,640	4,032
도로과 (p249~250)	방배 카페골목 특색있는 보행로 조성 공사	844,000	420,000	424,000
	동광로 확장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90,000	0	90,000
	방배카페골목 야간경관(스마트조명) 개선사업	800,000	0	800,000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연간단가)	2,920,116	2,320,116	600,000
	미지급용지(방배동 750-1,2)보상	195,663	0	195,663
	제설 대책 업무	1,180,047	1,129,147	50,90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255,687	0	255,687
	제설대책업무 및 제설대책민간용역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1,694	0	11,694
	골목길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이자 반납금 [시]	2,291	0	2,291
	방배동 1555등 25필지 도로부지 매입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41,702	0	241,702
물관리과 (p251~252)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5,749,980	5,207,109	542,871
	간선도로 맨홀 정비비	212,400	177,600	34,800
	하수관로 보수 및 개량	5,278,071	4,770,000	508,071
	반포천 유지용수용 노후펌프 교체	70,600	0	70,60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7,172	0	7,172
	수방대책 운영 이자 반납금 [시]	13	0	13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7,014	0	7,01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이자 반납금 [시]	145	0	145
건강정책과 (p255~256)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859,313	0	859,313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1,825	0	11,825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3,552	0	3,552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5,388	0	5,388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3,557	0	3,557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검사 및 진단지원) 이자 반납금 [국]	1	0	1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검사 및 진단지원) 이자 반납금 [시]	1	0	1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976	0	976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치체보조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40,353	0	40,353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치체보조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40,353	0	40,353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256	0	256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56	0	256
	표본감시 운영경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79	0	179
	표본감시 운영경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79	0	17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6,227	0	6,22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4,362	0	4,362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전환사업) 이자 반납금 [시]	22	0	22
	인력운영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68,311	0	68,311
	인력운영비(동행센터방문건강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9,690	0	19,690
	서울형 입원생활복지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5,753	0	25,753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및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58	0	158
	빈대 등 돌발해충(곤충) 예방 및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20	0	220
	내곡보건지소 건립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627,694	0	627,694
건강관리과 (p257~262)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3,724,211	2,402,280	1,321,93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000	1,600	2,4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3,100,416	2,290,956	809,46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97,340	332,340	65,000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469,189	586,269	△117,08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710,335	0	710,33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21,760	0	21,76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0,880	0	10,880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응급처치 교육) 이자 반납금 [국]	92	0	92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응급처치 교육) 이자 반납금 [시]	92	0	92
	농식품바우처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8,291	0	18,291
	농식품바우처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1,175	0	21,175
	냉동난파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869	0	869
	냉동난파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870	0	870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8,113	0	8,113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8,930	0	18,93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자 반납금 [국]	7	0	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자 반납금 [시]	4	0	4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2,822	0	12,822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4,959	0	14,959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14	0	114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32	0	13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반환금) 이자 반납금 [국]	45	0	4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반환금) 이자 반납금 [시]	23	0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인력운영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358	0	35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인력운영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80	0	180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197	0	1,19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397	0	1,39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656	0	656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764	0	764
	자살유족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224	0	224
	자살유족 지원사업(반환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12	0	112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479	0	479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39	0	23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국]	126	0	12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시]	147	0	147
	난청 조기진단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423	0	423
	난청 조기진단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494	0	494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	0	1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	0	1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805	0	805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403	0	403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이자 반납금 [국]	47	0	47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이자 반납금 [시]	54	0	54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국]	66	0	66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시]	77	0	77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587	0	1,587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476	0	476
	치매예방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3,670	0	13,670
	치매예방관리사업 사용잔액 [시]	6,835	0	6,835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자 반납금 [국]	41	0	41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자 반납금 [시]	21	0	21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8,082	0	8,082
	국가예방접종실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9,429	0	9,429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95,236	0	195,236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27,782	0	227,78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117	0	1,117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559	0	559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915	0	1,91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37,436	0	37,436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49	0	14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026	0	2,026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반환금) 이자 반납금 [시]	58	0	58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190	0	1,190
	서울시 한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40	0	240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시]	1,078	0	1,07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이자 반납금 [시]	4,024	0	4,024
	자살예방사업(반환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878	0	1,878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자살예방사업인력운영비(반환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3,633	0	3,633
	서초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4,036	0	24,036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7	0	17
	3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859	0	85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826	0	82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4,926	0	14,926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이자 반납금 [시]	2	0	2
	치매관리사업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3	0	3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957	0	957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633	0	1,633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1,186	0	11,186
위생과 (p263)	보건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3,504	0	3,504
	식품안전관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47	0	47
	식품안전관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47	0	47
	학부모 식품안전보안관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12	0	12
	학부모 식품안전보안관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2	0	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893	0	89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042	0	1,042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403	0	403
의료지원과 (p264)	스마트식당 만들기 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048	0	1,048
	보건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79,811	0	79,811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86	0	186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17	0	217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건강면접) 이자 반납금 [국]	293	0	293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건강면접) 이자 반납금 [시]	146	0	146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1,263	0	1,263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263	0	1,263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이자 반납금 [국]	106	0	106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이자 반납금 [시]	106	0	106
	지역단위 DMAT 운영 이자 반납금 [국]	28	0	28
	지역단위 DMAT 운영 이자 반납금 [시]	12	0	12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 이자 반납 [국]	22	0	22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5,404	0	5,404
	에이즈 신속검사 사용잔액 [시]	1,108	0	1,108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51,578	0	51,578
	우리아이안심의원 운영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740	0	2,740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시]	3	0	3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15,272	0	15,272
	설연휴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시]	50	0	5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 이자 반납금	14	0	14
방배보건지소 (p266)	보건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72	0	72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 배움터 이자 반납금	72	0	72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건 축 과 [건축안전특별회계] (p275)	보전지출(건축안전특별회계)(보조금반환)	14,938	0	14,938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9,735	0	9,735
	건축공사(중소형) 안전점검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445	0	2,445
	찾아가는 안전점검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307	0	1,307
	2024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451	0	1,451
주 차 관 리 과 [주차장특별회계] (p279)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용역	993,447	1,112,190	△118,743
	인력운영비	4,571,289	4,836,514	△265,225
	공영주차장 건설	0	253,263	△253,263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0	253,263	△253,263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83,490	0	83,490
	구룡공영주차장 생활SOC복합화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	36,483	0	36,483
	구룡공영주차장 생활SOC복합화 사업 이자 반납금 [시]	10,649	0	10,649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042	0	2,042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운영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28,224	0	28,224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시]	6,092	0	6,092

V. 검토 의견

1.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이에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편성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금번 제출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7,187,713천원으로 53.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전년도이월금이 13,219,142천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998,528천원이 감소하였음.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보건 분야가 기정액 대비 11.8%인 3,734,746천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기정액 대비 5.8%인 2,813,911천원(가로환경 정비, 근린공원 유지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가 기정액 대비 13.1%인 2,795,054천원(방배카페골목 야간경관 개선사업, 대중교통 환경개선 등)이 각각 증액되었음.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보조금 반환 등에 14,93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88,516천원 등 총 △553,741천원을 감추경하였음.

2. 주요 사업예산안 검토

세 입 분 야

1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기획재정국

【재무과】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998,528천원

- 순세계잉여금이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과 같이 다음 연도로 넘겨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현금성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기정액 68,744,961천원 대비 △3,998,52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추계했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대비 실제 결산 결과 발생한 차액을 금번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감소는 2025년 9월 세출결산 추계 당시 85.3%였던 집행률이 실제 결산에서는 91.7%로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당초 추계액 873억원보다 약 483억원 감소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실제 수납액(1,208,810,185천원) - 예산현액

(1,183,057,151천원)=25,753,034천원]과 집행잔액[예산현액(1,183,057,151천원) - 집행액(1,085,084,502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45,760,107천원) - 보조금 반납액(13,219,143천원)=38,993,399천원]을 합산하여 산출되는데, 이 중 집행잔액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998,528천원이 감소한 것임.

■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 이월금): 8,520,500천원

-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을 위해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용잔액은 실제 수령액에서 집행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하여 산출됨.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의료 및 회복비 등의 통계목을 중심으로 총 34개 부서에서 약 85억원의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금번 추정 세입예산에 8,520,500천원을 계상하였음.
- 한편 각 사업부서에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통계목으로 세입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재무과에서 별도로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전년도 이월금」 통계목으로 일괄 세입 편성하는 것은, 결산 과정에서 확정된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다음연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반면, 각 사업부서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외부 기관 등)의 사업 정산에 따라 실제 반납받은 보조금 사용잔액, 환수금 및 이자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세입 편성하고, 해당 정산 결과를 토대로 상급 기관에 최종 반환하여야 할 국비 보조금 반환액을 확정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 있음. 따라서 재무과의 “전년도 이월금-국비보조금 사용잔액” 편성과 각 사

업부서의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은 각각 결산에 따른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의 총괄적인 세입 반영과 보조사업자 정산에 따른 실제 반환금의 세입 반영이라는 서로 다른 단계와 목적에 따른 것임.

<2025회계연도 국비보조금 통계목별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세부사업 목록>

(단위: 천원)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명	예산현액	실수령액	집행액	집행잔액
1	어르신 행복과	기초연금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52,749,532	52,749,532	49,687,641	3,061,891
2	자치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6,691,400	16,691,400	13,906,750	2,784,648
3	체육진흥과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건립	401-01 시설비	1,472,498	1,472,498	-	1,472,498
9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6,267,909	15,967,909	15,746,414	221,495
11	어르신 행복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3,152,634	3,152,634	2,957,412	195,222
12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85,266	873,539	684,700	188,839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 이월금): 4,698,642천원

-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을 위해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용잔액은 실제 수령액에서 집행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됨.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등의 통계목을 중심으로 총 34개 부서에서 약 47억원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금번 추경 세입예산에 4,698,642천원을 계상한 것임.
- 재무과에서는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전년도 이월금-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통계목으로 일괄 세입 편성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와 별도로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외부 기관 등)의 사업 정산에 따라 반납받은 보조금 사용잔액, 환수금 및 이자를 “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통계목으로 세입 편성하고 있음.

- 또한 각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 결과를 기초로 상급 기관에 최종 반환하여야 할 시비 보조금 반환액을 확정된 후, 사용잔액 및 이자 발생분 등을 포함한 최종 반환액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상급 기관에 반납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시비보조금 통계목별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세부사업 목록>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명	예산현액	실수령액	집행액	집행잔액
4	자치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3,338,280	3,338,280	2,781,350	556,930
5	건강정책과	내곡보건지소 건립	401-01 시설비	529,900	529,900	-	529,900
6	어르신 행복과	기초연금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6,592,942	6,592,942	6,210,955	381,987
7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시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13,320	613,320	377,344	235,976
8	어르신 행복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678,073	3,678,073	3,450,314	227,759
10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 및 회복비	1,032,810	1,019,135	798,816	220,319
13	여성보육과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341,979	2,561,877	2,436,799	125,078
14	기후환경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50,000	150,000	38,621	111,379
15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7,591,691	7,451,691	7,348,328	103,363
16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시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89,359	381,500	279,544	101,956

【재산세과】

■ 재산세: 17,187,713천원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14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자치구세임.
- 기정예산액 317,863,533천원에서 5.4%인 17,187,713천원이 증가한 335,051,24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산세 산출 항목 중 특별시분은 75,681,980천원으로 동일한 반면, 자치구분이 당초 242,181,553천원에서 259,369,267천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재산세 산출액 : ㉠ + ㉡ = 335,051,246,743원

▶ ㉠ 자치구분 : (당초)242,181,553,000원 → (변경)259,369,266,743원

* 당초 : $490,742,761,000 \times 98.7\% \times 50\%$ (서울시와 자치구가 50:50 공동 과세)

* 변경 : $525,570,955,912 \times 98.7\% \times 50\%$ (서울시와 자치구가 50:50 공동 과세)

▶ ㉡ 특별시분 : 75,681,980,000원

* 서울시 25개구 징수총액 $\times 50\% \times 1/25$

- 자치구분 재산세 증가의 주된 요인은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¹⁾과 더불어, 재건축 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과세유형이 토지에서 주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기존에는 토지로서 단일세율 0.2%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던 것이, 주택으로 바뀌면서 최고세율 0.4%가 적용되어 세율이 높아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분 재산세의 산출에 부과조정액 증가

1) [참고] '26년 공시가격 상승률

(단위 : %)

공동주택		개별주택		공시지가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22.05 ↑	18.6 ↑	5.63 ↑	4.34 ↑	5.82 ↑	4.9 ↑

분과, 징수율 98.7%를 반영함에 따라 17,187,713천원의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임.

2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도시관리국

【건축과】

■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938천원

-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 중 찾아가는 안전점검 지원, 건축공사장 (중소형) 안전점검, 2024년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시·구비 각 50% 매칭사업이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임. 이에 시비보조금 교부액 중 집행 후 발생한 사용잔액 및 이자를 산정하여 반납하고자 관련 세입을 편성한 것임.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시비보조금 수령액 및 반환금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A) 교부금액	(B) 집행액	(C) 잔액	(D) 이자액	(E) 반납액(C+D)
계	41,381,000	27,089,000	14,292,000	643,440	14,935,440
찾아가는 안전점검	1,533,000	218,500	1,264,500	41,700	1,306,200
건축공사(중소형) 안전점검	24,344,000	22,196,000	2,148,000	296,230	2,444,230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13,428,000	3,938,000	9,490,000	244,970	9,734,970
2024년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2,076,000	686,500	1,389,500	60,540	1,450,040

안전건설국

【주차관리과】

■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88,096천원

- 기정액 9,450,653천원 대비 세입액은 109,712천원 감소하고, 세출총계는 478,384천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세출액이 △4,711,941천원 감소한 반면, 사고이월액 92,136천원, 계속비이월액 5,087,985천원, 전년도이월금(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205천원이 각각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588,096천원 감소하였음.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결산 확정액(가)	기정액(나)	증감(가-나)	비고
① 세입액	60,420,531	60,530,242	△109,712	
② 세출총계	51,557,973	51,079,589	478,384	
세 출 액	24,059,971	28,771,913	△4,711,941	
사고이월액	92,136	0	92,136	
명시이월액	555,300	555,300	0	
계속비이월액	26,816,211	21,728,226	5,087,985	
보조금사용잔액	34,355	24,150	10,205	
순세계잉여금(①-②)	8,862,557	9,450,653	△588,096	

세 출 분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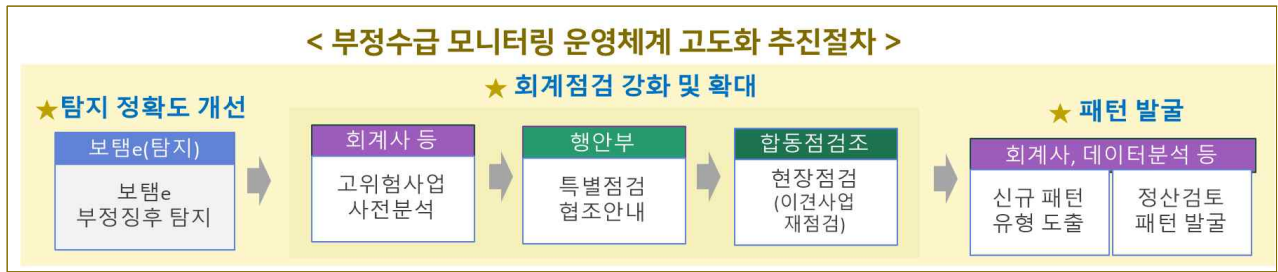
3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획재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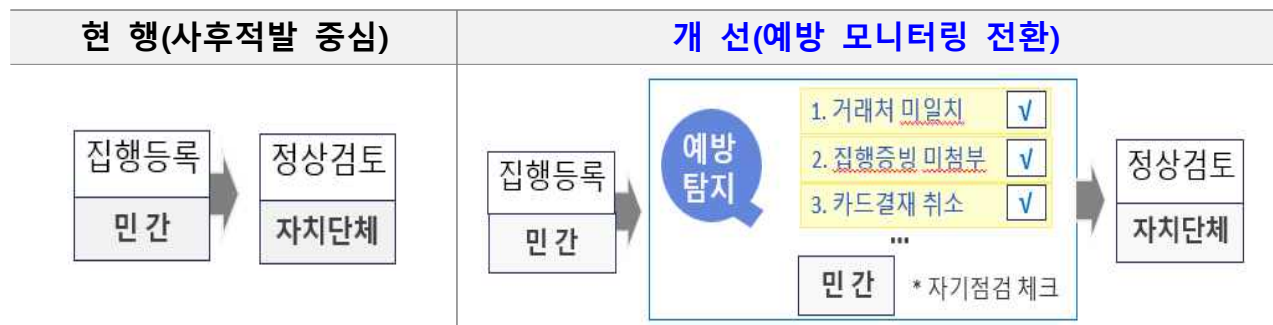
【기획예산과】

■ 부정수급 모니터링 자치단체 분담금: 4,671천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8호, 2026. 8. 18. 발령·시행)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중복되거나 부당한 수급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이는 범정부 차원의 부정수급 근절 기조에 발맞춰 보탬e 탐지 결과에 대한 자치단체 점검률을 높이고, 고위험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임.
- 이에 행정안전부 및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부정징후 모니터링 고도화 사업을 전담하도록 함.
- 특히 데이터 분석과 회계 전문가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신규 탐지 패턴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높이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기존의 정기·특별점검 등 사후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정산 단계부터 사전 예방 패턴을 적용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임.



- 총 소요예산은 1,150,000천원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분담 비용 추경 편성 또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음. 한편 지자체별 분담금은 2025회계연도 기준 민간보조사업수, 민간사업계획 금액, 당초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된 순위*에 따라 1등급에서 8등급까지 구분하여 등급별로 6,918천원 ~ 2,982천원 사이의 금액을 배정하는데, 서초구는 5등급²⁾에 해당하여 금번 추경을 통해 4,671천원의 분담금을 편성한 것임.

* 규모 순위=(민간보조사업수×30%)+(민간사업계획규모×30%)+(예산규모×40%)

2) <서울시 25개 자치구 분담금 내역>

등급	지방정부	분담금
4등급	서울특별시 성북구	5,232천원
5등급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671천원
6등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4,108천원
7등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3,545천원

■ 일반예비비: △363,387천원

-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은 경우, 사전에 확보해 둔 일반예비비는 가용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보 재원임.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신설 또는 증액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363,387천원을 감추경한 것으로 경정 예산액은 총 9,281,797천원임.

공간혁신국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 환경개선: 180,296천원

① 쿨링·온돌의자 설치

- 202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확대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32백만원으로 49개소를 설치하였고, 2025년도에는 쿨링·온돌의자 설치 사업(시비 16백만원, 구비 75백만원)을 시행하여 총 18개소를 추가로 제작하는 등 관내 총 303개소의 쿨링·온돌의자(온돌의자 227개소, 쿨링온돌의자 76개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중에 있음.
- 한편, 2026년 본예산에는 쿨링·온돌의자 5개소의 추가 제작·설치를 위한 시설비 26,5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미설치 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한파에 대비한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5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26,500천원을 계상한 것임.

-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통과 시기와 다가오는 연휴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설치공사 착공은 10월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신속히 준공하여 주민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추운 겨울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쿨링·온돌의자 설치 추가 예정 정류소>

연번	정류소명	관할동	민원접수경로	비고
1	사평역 (22195)	반포1동	응답소 1건(25.11.), 유선 1건(25.12.), 직통민원 1건(26.3.)	서울시 승차대, 나무의자만 설치
2	래미안퍼스티지 정문 (22990)	반포2동	응답소 3건 (25.2.(*2건), 26.1.)	마을버스 승차대, 나무의자만 설치
3	양재역 (22289)	양재1동	유선 2건(25.12.)	서울시 승차대, 나무의자만 설치
4	양재역엘타워빌딩 (22909)	양재1동	유선 1건(26.2.)	서울시 승차대, 나무의자만 설치
5	염곡동구룡사 (22367)	내곡동	응답소 1건(23.12.) 유선 2건(26.3., 26.7.)	서울시 승차대, 나무의자만 설치

2 서리풀 이글루

- 서리풀 이글루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한파 대피 시설로, 현재 관내 3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기온 추이를 확인하여 11월 중에 설치하고 이듬해 2월 말경 철거하여 동절기 약 4개월간 운영됨.
- 철거된 이글루는 다음 동절기 재설치 전까지 창고 임차 용역을 통해 보관하고 있으며, 창고에는 해당연도 철거한 이글루뿐만 아니라 이전 철거 물품 및 재사용 부품·자재 등을 함께 보관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관 공간 확보를 위해 11개월 임차 용역을 실시함.

- 설치는 통상 15일 정도 소요되며 2025년의 경우 이글루 설치 용역을 2025년 11월 21일에 착수하여 12월 5일에 준공하였고, 철거는 통상 4일 정도가 소요되고 2025년에는 이글루 철거 용역을 2025년 3월 24일에 착수하여 3월 27일에 준공함.
- 서리풀 이글루 사업으로 설치 용역비 20,054천원, 철거 용역비 13,320천원, 11개월 창고 임대료 11,000천원, 벽면제작비 56,462천원, 약 4개월 운영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비 2,960천원 등 총 103,796천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음.
- 한편 서리풀 이글루 설치사업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연례적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제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편성되었음.
- 향후에는 이러한 반복적·계속적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됨.

③ 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내 마을버스 공영차고지(전기충전시설 포함)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50,000천원을 신설하고자 함.
-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8호에 따른 전기 저장 버스 보급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관내에는 차고지와 충전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심 내 부지 확보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내 버스 운영 기반시설을 반영할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이번 과업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입지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및 LH 협의를 위한 세부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친화형 복합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상생형 시설 조성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당초 해당 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금년 하반기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안을 두고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를 예정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해당 협의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반영하고자, 본 용역을 연내인 2026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조속히 완수하기 위해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본 용역이 준공되면 LH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하여 지구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건의할 계획임.

● 주요 과업내용

- 마을버스 업체별 차고지·충전시설 실태 및 전기버스 충전소 수요 예측
-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개발 여건 및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입지 당위성 검토
- 공영차고지 및 전기충전소 적정 후보지 선정 및 수용 규모 산정
- 마을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주민친화형 복합개발 방향 제시
- LH 및 국토교통부 제출용 지구계획 반영 건의서(안) 작성
- 관련 부서(도시계획과, 주차관리과) 협의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제시
- 관내 공공기여와 연계한 예산 확보 방안 검토 등

- 다만, 해당 용역의 과업 기간이 2개월 정도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전 행정절차나 입찰공고 등의 소요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완료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본 용역은 지구계획 승인 전 국토교통부 및 LH와의 협의 과정에 적기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연내에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는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공인프라과】

▣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100,000천원

- 현재 마방공원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단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오는 10월 정월박람회 개최에 따른 이용객 급증으로 주차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주차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이에 2025년 본예산에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1단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업 수행기간은 2025. 4. ~ 12.로, 약 8개월간 용역을 수행하여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함. 1단계 용역을 통해 마방공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현재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여의천 및 매현시민의 숲 등과 연계하여 주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복합여가공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음.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변경(기정: 공원 → 변경: 공원 해제 또는 공원·주차장 중복 결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 도서를 작성하는 등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나아가 2025. 9. ~ 11.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5년 시행한 1단계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공원 해제)을 위한 후속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설비 50,000천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음.
- 그러나 2025. 12. ~ 2026. 5. 서울시 공원조성과·시설계획과 및 서초구 도로과·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추가 협의 과정에서 대체공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최신 교

통성 검토와 함께, 공원조성계획(안) 마련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따라서 마방공원 일대를 주차장 등 복합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공원 해제 및 주차장 결정, 도로 해제 및 공원 결정) 절차 진행을 위한 교통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다만,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대체공원 부지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용역 과업 범위가 증가하여 2026년 본예산으로 기 확보된 50,000천원으로는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100,000천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총 150,000천원 규모로 용역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원조성계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 교통성 검토를 포함한 용역을 차질 없이 본격 착수할 예정임.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 추진계획>

2025년(1단계)_완료	2026년(2단계)	2027년(3단계)	2028년(4단계)
마방공원 복합여가공간 기본구상안 마련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교통성 검토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방식 결정 및 공사시행 (2030년 준공목표)
1억원	1.5억원	2.5억원	재정, 민자사업, 공공기여 활용 등

- 다만, 2단계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시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용역 착수가 지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소관부서의 철저한 일정 관리가 요구됨.

【푸른도시과】

■ 서리풀공원(동광로 인접) 보행로 조성사업(신규): 300,000천원

- 현재 동광로(서래마을~서초대로 구간) 보행로는 대법원 측 단일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어, 양방향 보행로 개설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보행 민원을 해소하고자 2026년 1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된 「서리풀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시비 200,000천원을 재배정받아 서리풀공원 내 데크 산책로를 보완하고 기존 보도와 연결하는 데크로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3~6월간 추진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7~8월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시설공사는 9월 7일 착공하여 11월 5일 준공할 예정임. 그러나 현재 확보된 재배정 예산만으로는 총 200m 구간 중 일부 구간만 정비할 수 있어 전체 구간의 연속적인 보행 동선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잔여 구간까지 정비함으로써 보행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보행로가 전체 연결되지 못하고 일부 구간에서 중단될 경우, 주민 이용 불편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안에 잔여 구간 120m에 대한 데크형 보행로 조성, 수목 식재, 조명 설치 등 기존의 무장애숲길과의 연결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주민 보행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20,000천원, 철거공사 5,000천원, 시설물공사 161,000천원, 식재공사 80,000천원, 부대

(운반)공사 9,000천원, 폐기물 운반 5,000천원, 전기공사 20,000천원 등 총 300,000천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9월에 즉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0월 중 완료하고, 이어 철거·시설물 설치·식재·전기 공사 등 후속 공정을 신속히 이행하여 연내 준공 예정임.
- 다만, 9월 말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추석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용역까지 착수하는 것은 일정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시설물 공사에 착수하더라도 곧바로 동절기 진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공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민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되,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한 야외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시공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연내에는 실시설계 준공 및 공사 계약·착공을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절기 안전 관리 기준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실시공 및 공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240,000천원

- 양재근린공원 등 관내 근린공원 24개소, 수변공원 3개소의 공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6에 따른 공원 관리사무의 위임을 근거로 공원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486,000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 근린공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고 있으며, 공원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관내 노후·불량 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상반기 중 근린공원 10개소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음.

< 2026년 관내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세부 추진내역 >

연번	공원명	위치	세부내용
1	신반포근린공원	반포동 18-5	바닥분수 프로그램 및 시스템 수리
2	태봉근린공원	우면동 694	바닥 수리
3	청계산수변공원	신원동 296	화장실 및 정화조 설치
4	망루근린공원	우면동 736	운동기구 설치
5	바우외근린공원	양재동 105	철봉 수리
6	양재근린공원	양재동 311	수국 등 수목 식재
7	고인돌근린공원	양재동 390	초화류 등 수목 식재
8	청계산수변공원	신원동 296	건물 외벽 도색
9	우면수변공원	우면동 749	휴게시설 설치 등
10	몽마르뜨공원	서초동 산 177-3	흙막이 및 배수 설치
11	문화예술공원	양재동 200	공원시설물 이설 등
12	기타 근린공원	관내	소규모 정비

- 그러나 관내 근린공원 시설물의 노후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당초 편성된 본예산만으로는 적기 조치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정기적인 시설점검 결과 노후화가 심하고 민원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비가 시급한 공원을 우선 선정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 220,000천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바닥분수·화장실·배수로·웬스 등 정비가 시급한 노후 시설을 조속히 보수함으로써,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내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세부 추진계획>

연번	구분	공원명	위치	세부내용	비고
1	운동기구	양재근린공원	양재동 311	양팔올리기, 파도타기 등 6조 운동기구 교체	
2	수경시설	신반포근린공원 2개소	반포동 18-5 외 1	생태연못 바닥 바닥분수 바닥판넬 정비 등	
		양재근린공원 등	양재동 311 등	바닥판넬 , 수위조절 장치 등 노후 시설 정비	
		쿨링포그	서초동 1627-4 등	하반기 폐수작업 및 장비 정비 등	
3	화장실	양재천근린공원	양재동 261-22	노후시설 정비	
		문화예술공원	양재동 200	약취 등 시설 정비	
4	배수로	섬들근린공원	우면동 729 외 1	토사유출 방지	15m
		우면산근린공원	양재동 193-7	보도 토사유출 방지	20m
		양재근린공원	양재동 311	토사유출 방지	25m
		몽마르뜨공원	서초동 산177-3	토사유출 방지, 노후시설 정비	30m
		송동근린공원	우면동 777 외 3	노후시설 정비	10m
		반포근린공원	반포동 114-3	노후시설 정비	20m
		명주근린공원	잠원동 50-4	노후시설 정비	20m
		문화예술공원	양재동 200	노후시설 정비	40m
		우면수변공원	우면동 749 외 2	토사유출 방지	20m
5	목재헨스	송동근린공원 등	우면동 777 외 3 등	안전헨스 파손 교체 등 (2012년 보수)	
6	맨발길	반포근린공원	반포동 114-3	흙 쓸림으로 인한 황토 유출	
		문화예술공원	양재동 200	맨발길 흙 경도가 높아짐	
7	기타시설물	창계산수변공원 등	신원동 482-2 일원	조형물 도색 등 노후시설물	
8	기간제근로자 초소	양재근린공원	양재동 311	초소 기울어짐, 바닥 등 노후 시설물 정비	

○ 다만, 9월 말 확정되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시기와 다가오는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설치공사의 착공은 10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절기 이전 준공을 위한 공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공원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장 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기울어짐과 바닥 손상이 심각한 대기초소 정비 예산 20,000천원을 함께 반영하였음.

■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180,000천원

- 공원 전기안전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안전전문관리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분전반과 공원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방식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에 따라 누전차단기의 동작 상태, 등주별 접지 및 절연저항 측정, 인입선 및 등주 내 배선 상태 누전여부 점검, 등주와 점멸기의 파손 및 부점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함.
- 분전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개별 공원 등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점검을 의뢰하여 공원당 2년에 1회씩 순환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매년 관내 공원, 녹지대, 화장실 등의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검사수수료(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부적합 개소 보수 비용은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예산(시설비)에 포함하여 편성함.

- 다만, 정기점검 결과가 매년 연말에 도출되는 행정 일정상 본예산 편성 시점에 정확한 유지보수 금액 책정이 어려워 예산 편성 시점에는 전년도 부적합 개소 보수에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소요액을 추계하여 반영하고 있음.
- 한편 2025년도에 실시한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부적합 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2026년도 본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예술공원 내 배관·배선 및 전기시설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여 모든 분기에서 감전 및 화재위험으로 긴급조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노후케이블 교체 및 누전 방지 정비공사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임.
- 그러나 관내 공원 수가 많고 부지가 넓으며, 전기시설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본예산만으로는 부적합 개소 정비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80,000천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생활권공원 보수정비사업 설계(신규): 60,000천원

-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 불편 및 민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공원을 우선 검토한 결과, 신동근린공원·양재천근린공원·동덕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정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운동공간 및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요 시설의 노후 상태와 이용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비 범위와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사전 실시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총 6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

<생활권공원 보수정비사업 설계 세부 추진계획>

연번	공원명	규모 (㎡)	설계비 (천원)	세부내역
1	신동근린공원	6,648.4	15,000	휴식공간 등 노후 시설 정비 (운동기구, 수경시설 등)
2	동덕어린이공원	936.0	15,000	어린이놀이시설 등 노후 시설 정비 (놀이시설, 주민쉼터 등)
3	양재천근린공원	19,258	30,000	휴게시설 등 노후시설 정비 (운동기구, 수목식재, 족구장 등)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연내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 공사비를 반영하여 설계와 시설공사 간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현장 조사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내 위험 요인을 적기에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주민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추정 편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시설계용역이 지체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될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속히 준비하여 실시설계용역이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아가 향후 설계와 공사가 연속성 있게 연계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신규): 7,500천원

-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인 서초구는 관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사무관리비 7,500천원을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은 주민 요청 등 현안이 발생한 재건축 현장에 구청장을 비롯해 서초구 전문가 지원단, 소관 업무 국·과장, 조합 관계자 및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며, 구청장이 신속 지원단과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구청, 조합 사무실, 동 주민센터 등에서 탄력적으로 추진됨.
-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구성은 서초구에서 기존에 구축·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인재풀을 바탕으로 현장별 현안에 맞게 차출·구성되는 구조로 지원단 출범 이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0명의 전문가를 신규 충원하였으며, 현재 건축·경관·교통·법무·세무·감정평가 등 14개 분야 총 123명의 전문가 인재풀이 구축되어 있음.
- 한편 2026년 6월 구청장 최우선 공약사업으로 기본방침 수립 및 운영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방배신동아, 방배14구역 등을 대상으로 신속 지원단 활동을 본격 추진함.
- 그 결과 재건축 신속 지원단 실제 운영 45일 만에 방배신동아 착공(7.9.), 반포3주구 준공(7.23.), 방배5구역 조기준공(8.14.)이라는 가시적

인 성과가 입증된 만큼, 본예산 편성 시기까지 대기할 경우 정책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지원을 기다리는 타 재건축 조합 및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중단 없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2026년 9월 4일 관내 리모델링조합장 간담회를 통해 신속 지원단의 자문 대상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고,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재건축 신속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임. 현재 분야별 전문가 인재풀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현장에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투입·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165,440천원

-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4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사업 초기 단계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165,440천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용역을 통해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행정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및 동의서 접수·정리에 관한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등의 과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함.
- 현재 2026년 하반기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구역인 서초현

대아파트 및 양재우성아파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신청할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시·구비 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임.

- 2개 구역의 용역비는 서초현대아파트 61,930천원, 양재우성아파트 103,510천원으로 총 165,440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구비 부담분 50%에 해당하는 82,720천원(서초현대 30,965천원, 양재우성 51,755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임.
- 아울러 2개 구역 모두 신청할 경우 서울시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보조금이 교부되면 일반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용역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의 통상적인 과업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사전 행정절차 및 입찰공고 등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추경 예산의 확정 시기가 9월 말경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더라도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지원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신규): 120,000천원

- 2025. 6. 공공인프라과의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2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에 대한 5년 주기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특히 반포3주구, 방배5구역, 신반포21차 등 대단지 아파트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교통 등 주변 기반시설 및 도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고도화하여 실효성 있는 주거정비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금회 추경에 용역비 120,000천원을 편성하려는 것임.

- 2022년 관리방안이 수립된 이후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규제 등 서울시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다수 발표되었음. 급변하는 주거 환경 및 제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 수립·개정된 법령 및 지침을 정밀 분석하고, 변화된 여건을 관내 주거정비 사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 착수가 시급한 실정임.
- 이와 함께 서울시 및 서초구의 핵심 정책 기조인 '신속을 넘어선 쾌속 재건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아울러 서울시의 모아타운 및 저층주거지 재개발 활성화 기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이를 위해 모아타운·저층주거지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서초형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내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서초구의 도시적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주거지 정비 및 종합 관리방안을 정립하고자 함. 나아가 재건축뿐만 아니라 관내 다양한 정비사업 유형을 아우르는 지속적·체계적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최근 정비사업 완료 단지를 중심으로 공공보행통로, 공공개방시설, 외부 개방 커뮤니티 등의 운영권 및 이용 접근성을 둘러싼 입주민과 외부 주민 간의 갈등 및 사회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정적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공공성 확보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서초구는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자 모아타운 및 저층 주거지 재개발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관내 다양한 정비사업 유형을 체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특히 최근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 완화 정책의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22년에 수립된 기존 주거정비 관리방안의 실효성과 적용성에 한계가 지적되는바, 급변하는 정비사업 환경을 적극 수용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가이드라인의 전면적인 보완·개정이 필요해 보임.
- 추계된 용역비 120,000천원은 현황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임. 과업 소요기간은 약 7개월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면, 연내 용역을 발주 및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임.
- 다만, 당초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의 수립 주기가 5년임을 감안할 때 차기 수립 시점인 2027년에 맞추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할 수는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도시계획 정책의 변화 속도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를 앞당겨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아울러 공공인프라과의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이 이미 2025년 6월에 수립된 바, 본 사업이 이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주거정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함을 감안할 때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편성하게 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있음.

【부동산정보과】

▣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 등: 14,280천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³⁾ 및 제11조⁴⁾에 따라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한 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에 개별검증을 의뢰함에 따라 발생하는 검증 수수료 예산임.

<최근 3년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와 관련 예산 편성·집행 현황>

연도	의견제출(건)	이의신청(건)	예산편성액(천원)	예산집행액(천원)
2026 (*26.8.28.기준)	476	873	67,174	60,588
2025	203	65	69,112	64,615
2024	48	9	72,184	68,938

- 2025년에는 검증 대상 필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7,360천원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을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다수의 필지가 일단지로 묶인 정비사업 지역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검증 대상 필지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

- 3)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 4)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에 수반되는 검증 수수료 예산의 증액 편성이 불가피하게 된 것임.

※의견제출 : 반포주공1단지-394필지(전체 476필지 중 82.8%)

※이의신청 : 방배5구역-758필지(전체 873필지 중 86.8%)

- 따라서 금회 추경에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7,360천원 대비 14,280천원이 증액된 21,640천원을 경정하고자 함.
- 소요 예산 21,640천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수수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제2호의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⁵⁾ 및 제3호의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⁶⁾을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산정지가 검증 필지 의견제출 470필지(필지당 6,450원), 산정지가 미검증 필지 의견제출 6필지(필지당 21,500원), 의견제출 검증 필지 45필지(필지당 15,050원) 및 828필지(필지당 21,500원)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를 각각 계상하여 합산한 금액임.

5) 제3조(개별공시가격의 검증 수수료)

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

- 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
- 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6) 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 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70%
- 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안전건설국

【가로행정과】

■ 서초대로42길(서초3동복합주민센터) 지중화 사업: 312,587천원

- 본 사업은 서초대로240 ~ 서초대로42길28 구간, 연장 170m 규모에 전주·통신주 11본을 철거하고 공중선 지중화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복합청사 건립부지 인근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 '24. 6. 한전 지중화사업 승인
- ▶ '24. 7. ~ 12. 한전 및 통신 이행협약서 체결
- ▶ '25. 7. ~ 12. 실시설계 완료
- ▶ '26. 9. 착공(관로공사)
- ▶ '27. 1. ~ 6. 선로공사
- ▶ '27. 12. 공중선 및 전주 철거 등 사업 준공(목표)

- 2024년 본예산에 지중화 공사비 1,200,100천원을 편성한 이후, 2025년 1차 납부액 441,255천원을 집행하였음. 이어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407,900천원을 2차 납부액으로 전액 납부하였으며, 오는 9월 관로공사 착공이 예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을 통해 지중화 통신 관로공사비 312,587천원을 반영하여 3차 분할납부를 이행하려는 것임.
- 지중화 사업비는 통신사 자가 설비의 지중화 자체설계(통신사) 산출 공사비를 서초구에 통보하면 이를 납부하는 방식의 구조적 특성상 정확한 예산액 추계 및 납부 일정을 예측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총 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되

는 사업이므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분할하여 편성 및 납부하고 있음.

- 이번 추경을 통해 통신 관로공사비 납부 완료 후, 통신 선로공사비는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예정임.

■ 동광로(서리풀공원) 지중화 사업: 572,012천원

- 본 사업은 동광로49길7 삼거리 ~ 서초대로 구간, 연장 340m 규모에 전주 11본을 철거하고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에 지중화 공사비 570,000천원을 편성하여, 지난 8월 한전의 지중화 사업 승인을 받았음.
- 한편 동광로 지중화 사업은 굴착복구비 절감 등 예산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동광로 도로 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 중인바, 동광로 도로확장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의 연내 착공이 필수적인 상황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 '26. 8. 한전 지중화사업 승인
- ▶ '26. 9. ~ 10. 이행협약서 체결 및 실시설계, 착공(관로공사)
- ▶ '26. 11. ~ '27. 2. 선로공사
- ▶ '27. 1. ~ 2. 통신 선로공사비 및 한전 공사비(분납분) 납부 예정
- ▶ '27. 3. 공중선 및 전주 철거 등 사업 준공(목표)

- 따라서 2026년 연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통신 관로공사비 572,012천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납부하려는 것임.

※ 2026년도 도로과 본예산: 동광로 확장 공사 1,000,000천원을 편성

※ 2026년도 2차 추경: 동광로 확장 구간에 대한 가로등주 이설 추경 편성

■ **바우뫼로(양재초등학교) 지중화 사업: 340,306천원**

- 본 사업은 양재초등학교 및 양재유치원 인근(바우뫼로18길 14 ~ 양재천로 33), 연장 570m 규모에 전주·통신주 29본을 철거하고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민간재원 1,508,179천원, 국비 651,200천원, 시비 455,599천원, 구비 1,521,809천원으로 총 4,136,787천원임.
- 통신사 자가설비 지중화는 통신사에서 통신케이블 지중화에 필요한 관로 공사내역을 산출하여 우리 구에 통보하면 납부하는 방식으로 2024년 12월 통신공사비 1,308,241천원을 1차 납부하였음. 이후 2025년 5월 통신사로부터 행정통신망 지중화 관로공사 미반영분에 대한 추가 납부 요청이 발생함에 따라, 금회 추경을 통해 행정통신망 관로공사비 340,306천원을 반영·납부하려는 것임.
- 지중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준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확한 예산액 추계와 납부 일정 예측이 어려워 분할하여 편성 납부하고 있음. 한전 공사비 213,568천원과 통신공사비 1,308,241천원 등 구비 총 1,521,809천원을 2024년 12월 납부하였으며, 이후 2025년 5월 통신사로부터 행정통신망 지중화 관로공사 미반영분에 대한 추가 납부 요청에 따라 금회 340,306천원을 반영하여 납부하려는 것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 | |
|---------------------|-------------------------|
| ▸ '24. 2. | 한전 사업승인 |
| ▸ '24. 5. | 이행협약서 체결 |
| ▸ '25. 3. | 실시설계 완료 |
| ▸ '26. 10. | 시험굴착(예정) |
| ▸ '27. 5. ~ 7. | 관로공사 |
| ▸ '27. 8. ~ '28. 5. | 선로공사 |
| ▸ '28. 5. ~ 7. | 공중선 및 전주 철거 등 사업 준공(목표) |

- 다만, 2025년 5월경 통신사로부터 행정통신망 지중화 관로공사 미반영분에 대한 추가 납부 요청이 이미 있었다면, 본예산에 관련 소요를 적기에 편성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26년 10월 시험굴착 예정으로, 행정통신망 관로공사는 시험굴착 이후 동절기를 지나 2027년 상반기에 통신 관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임.

■ 가로정비 순찰차량 및 창고 유지관리: 4,032천원

- 우리 구는 관내 보도를 무단 점유한 불법 노점상이나 무단 적치물 정비를 위해 총 4대의 단속차량을 운행 중에 있으며, 이 중 2대는 경유차량으로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유류 소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경유 단가가 전년 대비 34% 인상되었음.

<연도별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 실적>

연도	총계	노점 정비						적치물 정비		
		소계	손수레	조판	탁자	차량	천막	소계	일반	건축
2023	3,180	1,030	162	242	45	562	19	2,150	1,562	588
2024	2,987	1,140	303	257	42	533	5	1,847	1,212	635
2025	4,632	2,364	82	738	52	1,476	16	2,268	1,412	856
2026.8.23.	3,878	2,208	132	668	134	1,193	81	1,670	1,073	597

- 아울러 월평균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를 실시함에 따라 단속차량 운행량이 크게 늘어남. 따라서 가로정비 단속차량의 안정적인 운행 유지를 위해 부족한 유류비 4,032천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임.

【도로과】

■ 방배카페골목 상권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 424,000천원

- 방배카페골목(방배동 792-3 ~ 방배동 751-1) 구간 폭 2m, 연장 1,720m 규모의 특색있는 보행로를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상인회 측 의견을 수렴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에 필요한 50,000천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26. 3. 31. 용역이 준공되었음.
-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시설 공사를 시행하고자 202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420,000천원을 편성하여 방배카페골목 약 500m 구간에 도로포장 및 도로경계석 등을 설치하고자 하였음.
- 2026년 7월 노무비로 27,775천원 지출하였고, 8월 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6.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남은 본예산 402,250천원은 준공 시기에 맞춰 집행할 예정임.

<설치 예정 보도블록의 디자인 사진>



- 금회 추경을 통해 방배동 790-12 ~ 방배동 761-6 일원 약 500m 구간에 노후 보도·측구 철거 및 재포장, 바닥명판·블라드 등 도로시설물을 재설치하고자 시설비 424,000천원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것임.
-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3월 31일 준공되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공사가 8월에야 착공한 것은 추경을 통해 설계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 시설공사조차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시설비를 편성할 경우 공사기간이 동결기와 중첩되어 사업 완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이월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 금회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아울러 기정예산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는 방배카페골목 전체 1,720m 중 1,000m에 대해서만 보행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비가 미확보된 잔여 구간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대상지 전체의 정비가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미지급용지(방배동 750-1, 750-2)보상(신규): 195,663천원

- 본 사건은 원고 2인 소유의 사유지 방배동 750-1(11.4㎡) 및 750-2(7.4㎡)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들은 서초구와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 5. 27.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아울러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각 도로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시기부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 5. 1. 부터는 점유주체가 서초구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음.

- 이에 서초구가 항소하였으나 2025. 11. 26.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도로가 환지처분 및 공고에 따라 도로로 지정·환지된 것은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단지 40년 이상 해당 부지가 도로로 제공·사용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 이후 소송대리인의 법적 검토 결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증거의 제출이 어렵고, 유사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포기서가 없는 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결이 확정됨.
- 따라서 주문에 따라 원고에게 ① 6,47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② 2023. 12.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101,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 2025. 12. 12. 원고로부터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신청이 접수되어 각 토지별로 [공시지가×보상신청면적(m^2)×보상계수] 산식을 적용하여
방배동 750-1: $4,620,000\text{원} \times 5.7m^2 \times 3 = 79,002,000\text{원}$
방배동 750-2: $10,510,000\text{원} \times 3.7m^2 \times 3 = 116,661,000\text{원}$
총 195,663,000원의 토지보상금이 산출됨에 따라 이를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유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완료하여 도로부지 매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 **방배카페골목 야간경관(스마트조명) 개선사업(신규): 800,000천원**

- 방배카페골목 일대의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의 야간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큐브 5개소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이에 따라 미디어큐브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비 50,000천원과 미디어큐브 제작비 및 전기공사 등 제반 부대공사비 750,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800,000천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음.
- 미디어큐브는 계절과 시간대에 맞춘 테마 적용 및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연출하여, 거리의 야간 활력을 높이고 방문 매력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스마트조명 시설임.
- 시설 규격은 3방향(큐브 1개당 1~2m x 3개소, 폴대 높이 3.5m / 총 높이 6~9m) 및 4방향(큐브 1개당 1~1.5m x 3개소, 폴대 높이 3.5m / 총 높이 6~8m) 모델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형태와 세부 수치는 향후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설치 장소는 카페골목 시점 및 종점에 각 1개소, 주요 사거리 3개소 등 총 5개소를 구상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의 착수 단계부터 상인회 측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디자인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자 함.
-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핵심 구간에 시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방배카페골목의 관문 입지성을 한층 선명히 하고 미디어큐브의 운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위치 선정 시 구체적인 입지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추진 일정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미디어큐브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다만,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의 자문 및 옥외광고물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유관부서 협의와 상인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검토·반영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시기적으로 연내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더라도 곧바로 동절기에 진입하게 되므로, 안전 관리 기준 준수 및 동절기 공사 제한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동광로 확장구간 가로등 설치공사(신규): 90,000천원

- 동광로는 서래마을에서 서초대로, 반포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로 진·출입하는 핵심 관문이나, 출·퇴근 시간대 서초대로 진입 차량이 급증하면서 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서리풀 업무복합시설 등 동광로 인접 주요 구간은 도로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잔여 미확장 구간은 별도 사업계획이 없어 병목 현상에 따른 정체가 우려됨에 따라 잔여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임.
- 한편 전기공사비, 통합분전반 설치, 케이블 교체비, LED가로등 및 보행등기구 교체 등 가로등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90,000천원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동광로 확장 공사”에 포함하여 계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임.
- 도로 확장에 따른 차도 및 보도 폭 변경에 맞추어 야간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자, 가로등 용량 상향(75W→100W) 및 가로등주 11본 이설 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토목공사 일정(2026년 11월 ~ 2027년 6월)에 맞춰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임.

■ 방배동 1555등 25필지 도로부지 매입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41,702천원

-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구간 내 사유지를 조속히 보상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25필지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하였고, 2026년 7월 방배동 1652(지분 1/3) 및 방배동 1555 2필지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 절차가 최종 완료되면서 사업이 종료됨.
- 총 18필지에 대해 7,908,848천원의 보상금을 지출하였으며, 총 7필지 중 5필지는 2025년 1월 13일 과천주암지구 사업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원지동 382-2번지는 전쟁 당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가 소실되어 토지 소유관계 확인이 어려워 토지보상이 불가한 상황임. 또한 양재동 224번지는 KCTC 개발계획에 포함된 필지로 2023년 9월 기부채납 협의를 완료하였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25필지 보상 현황>

(2026. 7. 기준)

위 치	편입 면적(m ²)	추진현황(상세)	보상액(단위:원)	비고
25필지	2,695		7,908,848,130	
방배동 1958-1	110	보상완료('21~'22)(9인)	2,227,825,160	보상완료
원지동 393-11	1	보상완료('25)(1인)	1,634,900	보상완료
원지동 382-2	202	공부 불일치(1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소실	-	보상불가
원지동 393-7	9	보상완료('22)(1인)	9,225,000	보상완료
원지동 385-2	7	보상완료('22)(1인)	6,545,000	보상완료
원지동 386-22	11	보상완료('23)(1인)	51,260,000	보상완료
원지동 385-4	15	보상완료('23)(1인)	22,275,000	보상완료
내곡동 산12-769	355	보상완료('23)(9인)	1,861,200	보상완료
내곡동 산12-766	59	보상완료('23)(9인)	153,180	보상완료

위 치	편입 면적(m²)	추진현황(상세)	보상액(단위:원)	비고
내곡동 산12-770	508	보상완료('23)(9인)	3,922,850	보상완료
내곡동 산12-653	19	보상완료('23)(1인) 보상완료('25)(1인)	100,420	보상완료
내곡동 산12-765	184	보상완료('23)(33인) 보상완료('25)(2인)	34,457,850	보상완료
방배동 1655	86	보상완료('21)	1,218,591,330	보상완료
방배동 1652	93	보상완료('22)(5인) 보상완료('25)(6인), 보상완료('26)(1인)	1,020,085,990	보상완료
방배동 1643	53	보상완료('22)(2인) 보상완료('23)(1인)	454,113,610	보상완료
방배동 1555	17	보상완료('26)(1인)	342,266,660	보상완료
방배동 1489	96	보상완료('25)(6인)	2,316,799,980	보상완료
방배동 1843	10	보상완료('23)(1인)	82,830,000	보상완료
방배동 3150	6	보상완료('23)(1인)	114,900,000	보상완료
양재동 산75-2	17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 중 *과천주암지구	-	보상제외
양재동 584-1	3			
양재동 584-4	260			
양재동 산74	256			
양재동 산75-1	96			
양재동 224	68	기부채납 협의완료('25.6.28. 준공 예정)	-	기부채납

- 한편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총 2,338,440천원의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2026년 7월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금회 추경을 통해 보조금 지출잔액 203,201천원 및 이자수입 38,501천원을 반납하고자 시비 반환금으로 241,702천원을 계상한 것임.

<이자 발생액 및 금회 반환금 산출내역>

(단위 : 원)

일 자	집행내역	입금액	지출액	잔 액	이자액
계		2,338,440,000	2,135,239,000	203,201,000	38,500,990
2020-07-08	시비 교부금 입금	570,000,000		570,000,000	
2021-01-01	연도변경 (2020 -> 2021)	'20년 이자율 : 1.52% '21년 이자율 : 1.52%		570,000,000	4,201,440

2021-02-16	시비 교부금 입금	230,050,000		800,050,000	1,091,900
2021-04-28	시비 교부금 입금	721,963,000		1,522,013,000	2,365,510
2021-05-17	토지보상		609,295,665	912,717,335	1,204,260
2021-07-06	토지보상		52,756,330	859,961,005	1,900,450
2022-01-01	연도변경 (2021 -> 2022)	'21년 이자율 : 1.52% '22년 이자율 : 1.52%		859,961,005	6,410,360
2022-02-18	토지보상		73,702,500	786,258,505	1,718,970
2022-03-16	시비 교부금 입금	203,201,000		989,459,505	851,310
2022-03-18	토지보상		989,459,505	-	82,400
2022-06-28	시비 교부금 입금	122,069,000		122,069,000	-
2022-12-06	시비 교부금 입금	200,000,000		322,069,000	818,430
2022-12-08	토지보상		158,999,990	163,069,010	26,820
2022-12-12	시비 교부금 입금	291,157,000		454,226,010	27,160
2022-12-16	토지보상		26,581,745	427,644,265	75,660
2023-01-01	연도변경 (2022 -> 2023)	'22년 이자율 : 1.52% '23년 이자율 : 2.02%		427,644,265	284,930
2023-02-22	토지보상		57,450,000	370,194,265	1,230,670
2023-03-31	토지보상		11,137,500	359,056,765	758,030
2023-08-02	토지보상		121,056,815	237,999,950	2,464,010
2023-08-02	토지보상		34,798,950	203,201,000	-
2024-01-01	연도변경 (2023 -> 2024)	'23년~'26년 이자율 : 2.02%		203,201,000	1,709,330
2025-01-01	연도변경 (2024 -> 2025)			203,201,000	4,115,900
2026-01-01	연도변경 (2025 -> 2026)				4,104,640
2026-09-30	잔액반납				3,058,810

【물관리과】

■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542,871천원

① 간선도로 맨홀 정비비: 34,800천원

○ 간선도로 맨홀 정비비는 도로관리청(서초구 도로과 및 남부도로사업소)이 시행한 과년도 불량맨홀 정비에 대해 맨홀 관리기관(서초구 물관리과)이 사후 납부하는 공공운영비로,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추정 물량보다 12월 확정된 실제 정비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132개소에 대한 정비비 212,400천원이 계상되었음.

○ 이에 기정예산 177,600천원 중 152,460천원을 집행하여 정비 물량 84

개소에 대한 납부를 완료하였으나, 미납된 48개소에 대한 정비비 59,111천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25,140천원을 활용하고, 그 외 부족분 34,800천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것임.

<최근 3년간 맨홀 정비 집행실적>

구 분	2024년 (정비연도-2023년)	2025년 (정비연도-2024년)	2026년 (정비연도-2025년)		
			기납부	납부예정	
				집행잔액	추경예산
집행액	158,966천원	174,729천원	152,460천원	25,140천원	34,800천원
정비 개소	108개소	106개소	84개소	48개소	

② 하수관로 보수 및 개량: 508,071천원

- 하수관로는 주민 안전 및 침수 예방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로, 2024년도 4,320,000천원, 2025년도 4,520,000천원을 편성하는 등 매년 안정적인 사업비를 투입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는 지장물 이설비 95,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4,076,919천원의 구비를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700,000천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정예산액은 4,776,919천원임.
- 한편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8,071천원의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우기철 배수 불량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하수관로 CCTV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관로파손 및 구배불량으로 인해 강우 시 하수 역류가 발생하여, 긴급 관로 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확인하였으나, 기존 긴급민원 처리 등으로 기확보된 본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침수 위험 지역의 적기 긴급 정비를 위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임.

<긴급 하수관로 개량 구간>		
구간	시설현황	사유
계	D450~600mm, L=309m	
방배동 773-15	D600mm, L=135m	관상단 파손
반포동 753	D450mm, L=67m	토사퇴적, 나무뿌리 침입 등
	D600mm, L=20m	
방배동 450-14~450-9	D450mm, L=87m	구배불량

■ 반포천 유지용수용 신규 펌프구매(신규): 70,600천원

- 반포천의 안정적인 유량확보 및 치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내구연한 10년이 경과(16년 사용)한 노후된 유지용수용 취수펌프 1대 및 지배수펌프 1대를 교체하고자 함.
-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시설비 70,600천원은 신규 펌프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기존 펌프의 철거, 운반, 폐기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 내구연한이 상당 기간 경과한 반포천 펌프의 고장을 예방하고 하천 기능을 정상 유지하기 위해 적기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물의 내구연한 10년은 조달청의 권장사항으로 법적으로 교체를 강제하는 규정은 아님. 그러나 취수펌프가 고장 날 경우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천 건천화 및 수질 악화가 우려되며, 지배수펌프의 고장은 강우 시 침수 피해 등 심각한 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점검 및 예산 반영 계획 수립의 검토가 요구됨.
- 한편 관내에는 반포천과 여의천에 총 2개의 하천 유지용수 펌프장이 있으며, 2016년 신설된 여의천 유지용수 펌프는 여의천과 신원천에

유지용수를 동시에 공급하는 시설로 2025년도 신원천 유지용수를 신설하면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수중펌프 100마력을 200마력으로 용량을 증설하여 교체를 완료하였음.

보건소

【건강관리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321,931천원

-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등)을 지원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 기준과 연령에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난임시술 종류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의 한도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실적>

(단위 : 명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지원인원(명)	2,951	3,350	3,604
지원금액(천원)	2,109,920	2,215,387	2,389,794

- 시비 65%, 구비 35% 매칭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2,402,280천원(시비 1,561,482천원, 구비 840,79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2026년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예산관련 안내(수정)』(서울시 건강관리과-13949, 2026. 7. 22.)이 통보되었고 예산 부족액과 관련하여

자치구는 부족 예산에 대한 구비 부담분 35%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비 교부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음.

- 나아가 우리 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8월 기준 이미 기편성된 예산액이 거의 소진되어 예산의 추가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임. 따라서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분 861,634천원에 맞춰 구비분 460,297천원의 추가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0천원

-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1,600천원(국비 800천원, 시비 400천원, 구비 400천원)을 편성하였음.
- 연도별 집행 내역을 보면 2024년 지원자 1명에게 1,200천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2명에게 총 600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음. 그러나 2026년 8월 기준으로 3명의 지원자에게 1,600천원을 지원함에 따라 편성된 기정예산을 모두 소진한 상태임.
- 이에 보건복지부의 『2026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내시(2차)』(출산정책과-3905, 2026. 7. 27.) 및 서울시 『2026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2차)』(건강관리과-14218, 2026. 7. 27.)이 통보됨에 따라 국비 1,200천원, 시비 600천원의 추가 교부가 결정되어 금회 추경을 통해 구비 매칭분 600천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09,460천원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5~40일간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1,731,571천원(시비 1,325,670천원, 구비 405,901천원)을 계상하였고, 제6차 간주처리(4.13.)로 시비 33,440천원, 제8차 간주처리(5. 21.)에서 시비 359,107천원을 교부받았으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비 166,83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은 총 2,290,956천원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실적>

(단위 : 명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지원인원(명)	1,527	1,663	1,333
지원금액(천원)	1,729,333	2,355,572	2,290,956

- 그러나 2026년 8월 기준으로 우리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예산이 모두 지출되었음.
- 한편 서울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관련 안내』(건강관리과-13578, 2026. 7. 15.)에 따르면 자치구는 부족 예산에 대한 구비 부담분 25%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비 교부가 어려운 바,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분 607,095천원에 맞춰 구비 부담분 202,365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비를 교부받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으로 추경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65,000천원**

- 결혼, 자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 검사 후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 후 최대 5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292,340천원(국비 87,702천원, 시비 102,319천원, 구비 102,319천원)을 편성하였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실적>

(단위 : 명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지원인원(명)	103	3,735	2,757
지원금액(천원)	-	350,478	286,979

- 한편 2026년 8월 기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출된 예산은 286,979천원으로 기편성된 예산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의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예산 변경내시 알림』(건강관리과-13549, 2026. 7. 15.) 통보에 따라 서초구 예산이 당초 292,340천원→357,340천원으로 65,000천원 증액 조정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19,500천원, 시비 22,750천원, 구비 22,750천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117,080천원**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총 8회(1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 및 조기 발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목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를 555,400천원(국비 277,700천원, 시비 138,850천원, 구비 138,850천원)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은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예약하여 운영됨.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실적>			
(단위 : 명 / 천원)			
구분	2024.7~12월	2025년	2026년 8월
지원인원(명)	472	971	795
지원금액(천원)	106,106	383,253	246,960

- 다만, 2026년도 8월 기준 총 예산액 555,400천원 중 246,960천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은 약 44.5%에 그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월별 실적에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6년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알림』(자살예방정책과-2475, 2026. 6. 30.) 및 서울시의 『2026년 심리상담바우처사업 변경내시 알림』(정신건강과-2619, 2026. 7. 2.) 통보에 따라,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변경 내시 예산액이 총 438,320천원(국비 219,160천원, 시비 109,580천원, 구비 109,580천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음.
-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 △58,540천원, 시비 △29,270천원, 구비 △29,270천원 등 총 사업비 △117,080천원을 감추경 해야 함.

안전건설국

【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253,263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추후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시 사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적립된 자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253,26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추계 과정에서 세입 감소액 규모에 맞추어 세입과 세출의 총액을 서로 일치시키는 균형예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출 요구액을 조정해야 하므로 편성된 적립금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용역: △118,743천원

- 기정액 대비 △118,743천원이 감액된 993,447천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는데, 이 또한 세입·세출 총액의 균형재정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세출 요구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용역의 낙찰차액 중 일부를 감추경하려는 것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세입·세출 요구액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최종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예산액)	비고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	0	253,263	△253,263	세입세출 균형 맞추기 위한 감액 편성분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993,447	1,112,190	△118,743	

3. 종합 검토의견

-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9,417억 252만 6천원⁷⁾, 1차부터 12차까지의 간주처리액⁸⁾ 426억 1,575만 5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7억 5,850만 7천원 및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56억 7,371만 8천원을 합산한 총 1조 407억 5,05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5%가 증가하였음.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9%인 89억 725만 4천원이 증가한 721억 4,243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69%인 94억 4,605만 7천원이 증가한 435억 5,835만 2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인 5억 3,880만 3천원이 감소한 285억 8,408만 3천원이 계상되었음.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 재원은 7개 부서에서 322억 1,213만 7천원이 증가하고, 3개 부서에서 △40억 8,751만 2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세입 증가의 주된 요인은 자치구분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한 데 있음.
- 세출예산안은 94억 4,605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분야별로 살

7) 일반회계: 9,122억 3,236만 1천원/ 특별회계: 294억 7,016만 5천원

8) 일반회계: 425억 7,267만 4천원/ 특별회계: 4,308만 1천원

펴보면 보건 분야에 37억 3,47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28억 1,39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7억 9,50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편성된 본예산의 집행 중에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추가적인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본예산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편성됨.
- 따라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추경예산 편성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과 취지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편성 규모의 적정성 및 불가피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목적적인 판단과 함께 예산편성 일반원칙,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및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주민 편의 및 여가공간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매년 예측 가능한 연례적·반복적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 운

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용역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더라도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착수가 지체될 경우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는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시설공사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 시기와 다가오는 연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착공은 10월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신속히 준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반면, 실시설계용역과 함께 추진하거나 공사 소요기간이 긴 사업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VI. 참고자료

1.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2.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조직별)
3.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4.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조직별)
5. 2026년도 1억원 이상 간주처리 내역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